

프랑스 아동보호법제 개혁 (Loi réformant la protection de l'enfance)

I. 입법의 배경

지방분권화 이후 각 도(départment)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책임져왔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입활동은 매년 5십억 유로 이상에 달하는 예산의 최우선 순위에 아동보호조치를 둠으로써 그것을 개선시켜왔다. 국가는 이러한 조치들의 집약과 국제적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국가는 특히 사법(司法),보건 그리고 국가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동보호에 기여해왔다. 프랑스의 아동보호시스템은 검중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역시 새로운 어려움에 대처해야만 한다. 최근의 현실은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망과 관련해 문제를 드러내었다.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가정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것이 알려지지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 년 간 가족은 변화해왔다.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는 달라졌고, 혈연간의 유대감은 약화되었 다. 가족은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같은 시기에, 사 회는 심한 변화를 겪었다. 생활환경의 전반적인 개 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졌다.

이러한 변화를 맞아, 자기 자녀를 보호할 줄 모르 거나 보호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당국보다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과 가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족의역량과 가정환경에서의 자원에 기대는 것이다. 공공당국의 각종 개입은 부모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들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 그들의 요구를 참작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에 관한 모든 결정과 조치의 기초가 될 기본원칙을 형성한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 안전, 덕성 및교육환경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환경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해진 양태에 따라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아동에게는 복지, 안정,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의삶의 역정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 시설로 이동하는 것, 양육가정으로의 인계인수, 가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동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 아동과 부모 사이 관계를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이익을이 관계 유지의 대가로 종속시키지 않아야 한다.

최근 15년 사이에 아동의 권리 존중은 국제적 수준에서 새로이 구체화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 의해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La 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de Penfant)은



1990년에 프랑스에서 비준되었다. 이 협약은 오늘날 잘 준수되고 참조되고 있다. 의회는 이 협약의 문구 와 정신에 영향 받은 아동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한 (친자관계, 혈통 찾기-친부모 찾기, 입양, 학대방지 등) 법률들을 가결했다.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아동 보호 감독관의 임무는 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 존중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과 그 부모의 권리 존중을 목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자신에 관한 계 획에 대해 알고,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조언을 받고, 미래의 자기 삶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보호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에 관해 고안된 계획을 재검토 한다. 사법절차는 아동의 말을 청취하는데 더 세심 하게 배려해야 하다.

II. 공포

동법은 2007년 3월 5일자 법률 2007-293호로 공포 되고, 2007년 3월 6일자 관보(n°55) 4215쪽에 게재 되었다.

III. 입법의 기본방향

아동보호법제 개혁은 위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보호의 관계자들과 더불어 구상되었다. 각 도의 회는 아동보호에 관한 파트너들과 함께 더 나은 해 답을 찾고 혁신하며, 더 나은 조직을 연구하는 일에 모두 뛰어들게 되었다. 당초 가족부장관 Philippe Bas가 구상한 개혁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아동보호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적 역할

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3개의 최우선 목표(예방 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의 정보망을 조직하고, 아동 을 돌보는 활동을 다양화하는 것)를 통해 그들에게 이 본질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고 있다

1. 예방 강화

법안은 임신 4개월째의 관리를 체계화할 것을 예 정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각 아동에 대한 종합 평가도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6번째와 12번 째 생일에 잠재적인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의무적 의료방문이 실시될 것이다.

2. 정보망 구축

정보를 취합하는 도(département) 단위의 조직이 창설될 것이다. 사회복지직군 종사자들간 정보의 공 유가 쉬워지고, 역할 배분이 명확해질 것이다. 아동 에 대한 사회적 원조(ASE: L'Aide Sociale l'Enfance) 가 우선되고, 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것이다.

3. 보호 방식의 다양화

이것의 목표는 아동이 직면한 상황의 다양성에 부 합하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또한 소위 '상처받기 쉬 운 수용'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에 대한 원조의 강화도 규정되어 있다.

IV. 법률의 구성과 내용

1.개요

이 법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었다.

- (1) 예방을 발전시키고, 아동보호 임무를 명확히 한다(제1장).
- (2) 아동의 위험에 관한 경보장치와 리스크 측정을 강화하고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유기적으로 구성한다(제2장).
- (3)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입 방식을 개선하고 강화한다(제3장).
- (4) 아동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4장).
- (5) 광신도적인 일탈,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각종 신고의무 또는 예방접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의 아동보호(제5장).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보호의 임무(MISSIONS DE LA PROTECTION DE L'ENFANCE)

(1) 각 관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의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예방조치를 발전시키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료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정과 아동을 위해 관여하는 수많은 공공 혹은 민간 활동가들간의 더 나은 유기적 결합의 필요성은 이 법에서 말하는 '아 동보호'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활동 및 가족법전(Code de la famille et l'aide socile)'을 개정하여 모성 및 어린이보호에 종사하는 기관은 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아동의 사회원조 담당부서를 도와 편에서 아동보호에 참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 고 있다. 또, 모성 및 어린이 보호 기관에 의해 완수되어야 할 임무를 열거하고 있는 '공중건 강법전(Code de la santé publigue)' 에 아동에 게 닥칠 위험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법전에는 임신 4개월째부터의 임신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와예방을 위한 활동들, 개업의사와 병원의사와연계한 출산 전후의 예방(특히 모성·어린이보호 전문가들에 의한 산과병원과 퇴원 후 가정방문 보장)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3살 내지 4살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평가가들어 있다.

- (2) 어린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보호의 일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아동을 위험상태에 처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부당한 처우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1989년 7월 19일 법률'에서의 소위 "학대 받는 아동(enfance maltraité)"의 개념을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enfance en danger)"이란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이 개념을 기초로 사법적 관여의 기준이 마련된다
- (3) 판결에 따라 부모와 격리되는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 요건을 수정하였다. 이 요건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졌다. 격리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고, 연령을 11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였다.

3. 아동에 대한 청문 및 아동에 대한 사회적 원조와 사법적 보호 사이의 연계

- (1) 이 법에서는 가사사건에서의 아동의 법정진술 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분별력 있는 아동 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능력과 권리의 제한 도 두지 않고 있다.
- (2) 각 도 단위로 시급한 정보를 취합하는 조직을



창설하는데, 그것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 성되어 위험상황의 측정과 대처를 책임지게 된다. 이 정보전달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도의 회의장은 국가의 대표자 및 사법당국과 협정 을 맺는다. 시급한 정보는 도와 국가의 아동보 호 감독관에게 전달된다.

- (3) 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사회원조가 무익한 것 으로 판명되고 사법적 판단이 속히 필요하다 고 여길 경우 사법당국에 제소해야 한다.
 - ① 아동이 위험상황에 있고 사회원조가 그 상 황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아동이 위험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상황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 가족 이 사회적 관여를 거부하거나 전문가와 협 조하지 못하는 경우
- (4) 검찰관은 민법 및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제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 (5) 사법적 틀 내에서 아동보호 전문가 사이로 한 정된 정보의 공유는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 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 하는 데 엄격히 제한되는, 직무상 비밀유지 ·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6) 도 단위로 아동보호 감독관직을 창설하고, 정 보수집 팀의 지원을 받아 국가의 감독관(ONED) 과의 협조 하에 활동하게 된다.
- (7) 민법 제375-3조를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수 용(收容) 방식을 도입했다.
- (8) 아동을 보살피는 자격을 지닌 기관과 도(départment)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교육적 활동의 계속성과 연대성을 기하고 아동과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4. 아동보호 목적의 개입조치

- (1) 가족에 대한 관여의 목적과 평가를 정형화한 형태로 기록한 서식을 개발하도록 하고, 여기 서 가정과 전문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이다. 이 문서에는 도의회 의장, 관여 담당 기 관, 아동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다.
- (2) 가정경제가 어려워 아동에게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는 가정에게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제안 될 수 있다. 사회보장법상 아동이 권리를 갖고 있는 보조수당은 변형되어 민법에 편입된다.
- (3)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개입 방식을 다양화하 였다. 거주지와 상시 수용시설과의 사이에 과 도기적인 장치를 한 것이다. 이 중간적 개입방 식은 아동과 그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좀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또 한 아동을 종일 수용하고 심리적, 교육적 지원 을 할 수 있는 수용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예 외적으로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 내 위기 발생시 아동을 임시 수용할 수 있는 수 용 수당도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그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고 위기 종료시 가정으로 문제없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처럼 아 동이 위험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검 사장의 즉각적인 정보전달에 따라 6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는 긴급수용도 신 설하였다.
- (4) 폭력적인 아동과 취약한 아동이 같은 생활단 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일부 시설에 잔존 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시설로 하여금 취약한 아동을 더 배려하여 멀리 떨어진 생활단위에서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2년의 경과규 정을 두고 있다.

(5) 의사, 의료직업 종사자, 약사, 사회복지사, 법 관, 교원, 국가경찰관, 지방경찰관, 그리고 국 가헌병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에 관한 최초 및 평생 교육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회원조 기관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도 규정하고 있다.

V. 평가와 전망

주지하다시피 프랑스는 모성과 아동보호에 관하여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의무부과나 처벌 또는

공공기관이 독단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파트너로 삼아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아동보호를 기하고자 한 점은 하나의 입법적 배려하고 할 수 있겠다. 또 아동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법정에서의 진술능력을 인정하고, 사법적 보호와 사회적원조를 연계하고자 한 점도 Durkheim이 말한 '유기적 연대'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서 탈피하여 이제 다음 세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를 완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세대 전 그들이 겪었던 사회문제에 봉착한 우리로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비교법적 사례임이 틀림없다.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